



귀하의 산재보상 급여



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상은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한 임금 손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합니다.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음을 알리십시오.
-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 알리십시오. 부상 후 30일 이내에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산재보상위원회(위원회)에 부상/질병을 신고하는 근로자 청구서(양식 C-3)를 제출하십시오. 중요: 청구는 부상/질병 발생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주도 사고를 신고해야 하지만, 귀하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 같은 신체 부위를 다쳤거나 유사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 건강 정보 제한적 공개(양식 C-3.3)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양식은 wcb.ny.gov/form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신청

가장 빠른 방법: wcb.ny.gov/file-claim을 방문하여
온라인 근로자 청구서(양식 C-3)를 작성하십시오

원하시는 경우 양식 C-3의 서면 버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일반적으로 뉴욕주 직업 건강 클리닉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의료 제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승인 의사, 전문 간호사, 의사 보조 및/또는 침술사, 카이로프랙터, 면허 임상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족부전문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고용주의 보험사(또는 자가 보험 고용주)가 산재보상 의료 서비스를 위한 우선 제공자 조직(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우, 귀하는 PPO 네트워크 내에서 초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가 약국 또는 진단 검사 네트워크도 보유한 경우, 귀하는 해당 네트워크 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필수 제공자 네트워크와 이용 방법에 대해 귀하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재보상 치료, 약 또는 처방 장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청구를 진행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유효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산재보상 보험사가 이러한 청구서를 지급합니다. 단, 이러한 어느 한 경우에는 귀하가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또는 일반 건강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wcb.ny.gov/find-a-provider에서 위원회 승인 의료 제공자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에 문제가 있거나 승인된 의료 제공자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료 책임자 사무소에 **(800) 781-2362**로 전화하십시오.

교통비 및 기타 비용

치료 또는 독립적 검진을 위해 이동할 때 발생한 마일리지, 대중교통 또는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마다 위원회 웹사이트 wcb.ny.gov/forms에 있는 청구인의 의료 및 교통비 기록 및 환급 요청서(양식 C-257)를 사용하여 해당 비용 영수증을 위원회와 보험사에 제출하십시오.

임금 손실에 대한 급여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사는 즉시 임금 손실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7일 넘게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 사고 이전보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해서 급여가 감소한 경우.

심리가 열리는 경우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가 필요합니다. 심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리의 이유, 날짜 및 시간을 알리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위원회로부터 받는 모든 우편물을 검토하고 지시된 방식으로 응답하십시오. 기록용으로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심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대면 출석을 승인하지 않는 한 심리는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심리 참석 방법에 대한 지침은 심리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심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심리 통지를 받은 즉시 위원회에 알려 일정을 변경하십시오.

귀하는 청구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사/유면허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 판사에게 문의하거나 위원회에 전화하십시오.

청구가 분쟁 중인 경우

때때로 보험사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보험사는 귀하가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거나, 귀하의 고용주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이의가 제기되면 위원회는 심리를 개최합니다. 산재보상법 판사가 귀하의 의료 기록, 임금 및 기타 증거와 증언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문제를 결정하고 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귀하 또는 고용주의 보험사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위원회 위원이 항소를 검토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변경하거나, 기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추가 심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가 분쟁 중인 경우, 사례가 심리되는 동안 장애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급여를

신청하려면 wcb.ny.gov/forms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 급여 청구 통지 및 증명서(양식 DB-450)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거나 위원회 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가 귀하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 장애 급여는 귀하의 임금 손실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

청구 일정

의료적 치료: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부상 후 15일 이내에 의사를 만나고, 지속적인 근무 중단이 있는 경우 90일마다 의사를 만나십시오.

임금 대체: 장애가 있고 귀하의 사례가 승인되었으며 7일 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고 발생 후 18일 이내 또는 보험사가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청구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심리는 청구에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28일 후에 예정됩니다.

언어 지원

위원회는 귀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언어로 문서를 번역하고/하거나 무료로 심리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거나 번역을 이용하려면 [877-632-4996](http://(877) 632-4996)으로 전화하거나 wcb.ny.gov/lac를 방문하십시오. 심리 체크인 과정에서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산재 근로자 권익보호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 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대체 업무 또는 가벼운 업무를 배정하여 치유하는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업 재활 상담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가족 문제 또는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위원회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석사급 유면허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 웹: wcb.ny.gov/returntowork
- 전화: (877) 632-4996

이메일:

- 산재 근로자 권리보호관 advinjwkr@wcb.ny.gov
- 직업 재활 vocrehab@wcb.ny.gov